

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

신청인	제작자명	제작자등록번호
	대표자명	대표자생년월일
	주소	
자동차	차명	최초제작자명
	형식	원동기형식
	차대번호	
소량생산 인정대수		

「자동차관리법」 제30조제5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4제2항에 따라 소량생산 자동차 인정 확인서를 교부합니다.

년 월 일

국토교통부장관



직인